

#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법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,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금고의수 2개로 제한(제4조제2항 규정)

- ① 일반회계는 1금고 및 총 금고의 수 2개로 제한  
-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 관련

나.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비(제5조제2항 규정)

- ① BIS 자기자본 비율 항목 명칭 ⇒ 총자본 비율로 변경
- ② 대손충당금 적립율 항목 배점 조정 ⇒ 2점에서 1점으로 하향
- ③ 수시입출금 예출금리 항목 배점 조정 ⇒ 2점에서 3점으로 상향
- ④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항목 배점 조정 ⇒ 6점에서 7점으로 상향
- 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항목 배점 조정  
⇒ 7점에서 8점으로 상향
- ⑥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항목 ⇒ 삭제

- ⑦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항목 배점 조정  
⇒ 5점에서 7점으로 상향
- ⑧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, OCR센터 운영실적 등 항목  
명칭 변경 ⇒ 지방세입금 전담 전산센터 운영실적
- ⑨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 명칭 변경 ⇒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
- ⑩ 군과의 협력사업 명칭 및 배점 변경  
⇒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및 5점에서 4점으로 하향

※개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[별표 참고]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[별첨 2]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평창군공고 제2014-813호(2014.8.1~2014.8.22) 결과,  
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감사실-8088호, 2014.8.13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8088, 2014.8.13)
- 4) 성별영향 평가 : 원안동의(주민생활지원과-49743, 2014.8.15)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[별첨 1]

##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[별 표]

##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(제3조제2항 관련)

### I. 총 관

(단위 : 점)

평 가 항 목	배 점		비고
	현행	개선안	
총 계	100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32	31	하향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	10	10	
㉠ 국외 평가기관 평가	6	6	
㉡ 국내 평가기관 평가	4	4	
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)을 평가			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22	21	
㉠ <b>총자본 비율</b>	7	7	
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7점)로 평가			
㉡ 고정이하 여신 비율	7	7	
㉢ 자기자본 이익률	6	6	
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			
㉣ 대손 충당금 적립율	2	1	하향
2.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	17	18	상향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6	6	
나. 공공예금 적용금리	5	5	
다. 군에 대한 대출금리	4	4	
라. 수시 입출금 예치금리	2	3	상향
3. 군민 이용의 편의성	21	20	하향
가.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	5	5	
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			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6	7	상향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7	8	상향
라.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	3	-	삭제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	20	22	하향
가. 세입·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	5	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7	7	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	5	7	상향
라. <b>지방세입금 전담 전산센터 운영실적</b>	3	3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군 협력사업 추진 능력	10	9	하향
가. <b>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</b>	5	5	
나. <b>군과의 협력사업 계획</b>	5	4	하향
※ 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”는 ‘실적’으로만 평가, “군과의 협력사업”은 ‘계획’으로만 평가			

## II.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

### 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31점)

####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점)

##### ㉠ 국외 평가기관 평가(6점)

-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(Moody's), 애스앤피(S&P), 피치(FITCH)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

배 점	등 급 별 배 점				비 고
	최고등급	상위등급	보통등급	요주위등급	
6.0점	6.0점	5.5점	5.0점	4.5점	

##### ㉡ 국내 평가기관 평가(4점)

-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,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

배 점	등 급 별 배 점				비 고
	최고등급	상위등급	보통등급	요주위등급	
4.0점	4.0점	3.5점	3.0점	2.5점	

####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1점)

-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·확인(배점등급은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적용)

##### ㉠ 총자본 비율(7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 고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
7.0점	7.0점	6.5점	6.0점	5.5점	5.0점	

##### ㉡ 고정이하여신비율(7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 고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
7.0점	7.0점	6.5점	6.0점	5.5점	5.0점	

㉔ 자기자본 이익률(6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 고
	20%이상	16%이상~ 20%미만	12%이상~ 16%미만	8%이상~ 12%미만	8% 미만	
6.0점	6.0점	5.5점	5.0점	4.5점	4.0점	

㉕ 대손 총당금 적립율(1점)

배 점	비 율 별 배 점					비 고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
1.0점	1.0점	0.9점	0.8점	0.7점	0.6점	

2. 군에 대한 예금·대출금리(18점)
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6.0점	6.0점	5.5점	5.0점	4.5점	4.0점	

나. 공공예금 예치금리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다. 군에 대한 대출금리(4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4.0점	4.0점	3.6점	3.2점	2.8점	2.4점	

라. 수시입출금 예치금리(3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3.0점	3.0점	2.7점	2.4점	2.1점	1.8점	

3. 군민 이용의 편의성(20점)

가.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나.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(7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7.0점	7.0점	6.3점	5.6점	4.9점	4.2점	

다.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8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8.0점	8.0점	7.2점	6.4점	5.6점	4.8점	

라. ~~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자원계획(3점) ⇒ 삭제~~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3.0점	3.0점	2.7점	2.4점	2.1점	1.8점	
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(22점)

가. 세입·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7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7.0점	7.0점	6.3점	5.6점	4.9점	4.2점	
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(7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7.0점	7.0점	6.3점	5.6점	4.9점	4.2점	

라. 지방세입금 전담 전산센터 운영실적(3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3.0점	3.0점	2.7점	2.4점	2.1점	1.8점	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군 협력사업 추진능력(9점)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(5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5.0점	5.0점	4.5점	4.0점	3.5점	3.0점	

나.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(4점)

배 점	순 위 별 배 점 표					비 고
	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	
4.0점	4.0점	3.6점	3.2점	2.8점	2.4점	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4조(금고지정) ② <u>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,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금고 지정) ② <u>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[별첨 1]

##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-2270

## 관 련 법 규

### 지방재정법 제77조 (금고의 설치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,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
4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
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

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,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, 시·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